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6.(화) 13:00 배포 2023. 12. 26.(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개 추가
- 전략물자 사후관리 강화 및 면제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6.(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2.26.(화)~'24.1.15.(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참조)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설명회('24.1.12.(금) 잠정)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방규철 (044-203-4832)
			사무관	서현우 (044-203-48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별표2-2>

개정 전 798개	개정 후 1,159개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 · 기술사양 · 금액 기준에서 **품명 · 기술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

품목 구분	통제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품목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별표24>

* 전략물자 ⇒ 거부 / 상황허가 ⇒ 원칙적 거부 및 사안별 심사
사안별 심사대상 : 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向 수출 등

2 제도 개선

○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조 2항 및 39조 2항>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조 1항 4호>

○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조 1항 8호>

○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별표 13-2>

* NSG 未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대상 면제 확대